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6)
8.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7)
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5)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6)
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0)
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7)
1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0)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1)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16)
1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093)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35)
19.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8)
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4)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2)
2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8)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6)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8)
  2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0)
  2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2)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5)
  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5)
  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3)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2)
  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4)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8)
  3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4)
  3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7)
  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1)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
  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2)
  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7)
  3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26)
  4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4)
  4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06)
  4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3)
  4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2)
  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6)
  4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0)
  46.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4)
  47.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16)
- 

### 상정된 안건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 3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 9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 9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 9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 9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2) ..... 28
-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권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박용갑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일 제명 법안과 함께 심사하자는 요청이 있어 오늘은 심사를 미루고 9월 4일 목요일 2차 소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2)

(14시09분)

○소위원장 권영진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5조제3항과 제113조제2항제1호는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현행법에 따른 건축주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의 위반사항 등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허가권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안 제24조제7항과 제113조제1항제6호는 공동주택, 종합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공사시공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24조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별처 규정이 없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공사시공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는 것에 덧붙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입니

다.

개정안은 또한 사진 및 동영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 대상을 공사감리자로 법률에 명시를 하고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 시기·방법·보존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신설되는 사진 및 동영상의 제출 의무의 적용 시점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정의견은 뒤쪽 5페이지의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권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는 개정안에도 동의하고, 공사감리자의 법령 위반사항 등 보고 의무 신설과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시공자의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제출 의무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 소위원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 박용갑 위원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너무 약하지 않나요? 도서대로 공사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설계도대로 공사하지 않고 100만 원 과태료 물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 박용갑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을 하면서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100만 원인가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요. 이 과태료의 성격은 건축주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어서 허가권자에게 추후에 그 사항이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알린 후에 보고를 허가권자에게도 같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정을 한 것이라서 보고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지,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 박용갑 위원 그것은 별도라 이것이지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 박용갑 위원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고……

○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요.

○ 박용갑 위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긴다 이 말씀이시지요?

○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저도 좀 의문인데요. 법을 만들면, 법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 과태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고 안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시킨다는 건데 보고를 왜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과태료 100만 원은 너무 약하다, 이것 가지고 보고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좀 올리는 게 어떤가 싶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가 보통 이런 규정을 신설할 때는 기존 과태료 규정 속에 호 형태로 끼워 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3조에 보면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1호로서 이것을 넣는 방식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서 법규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가운데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기술적인 것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진석 위원** 전례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과태료가 이렇게 쭉 몇 개 항목이 있으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태료 항목에다가 저희가 넣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실효성으로서 금액을 올리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보고 수준이나 알림 수준 외에 앞서 말했듯이 어떤 위반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다른 형태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공자가 정해진 진도에 따라 사진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같은 것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과태료 200만 원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 과태료 내고 말지 뭘 복잡하게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거기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매 공기마다, 공사 단계마다 촬영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일이 과태료보다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과태료 내고 말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 부분이 원래는 말씀하신 과태료하고, 과태료도 이것도 앞서 한 규정하고 같은 부분인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200만 원짜리 과태료……

○**문진석 위원** 과거 전례를 비춰 보면 200만 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 법이 진짜 좋은 법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 200만 원 가지고 이 법을 강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않을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게 과연 필요한 거냐,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이냐 이 차이는 다른 사례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견주어서 저희가 적정한 선을 찾은 거고요. 이번에 왜 100만 원 이하냐……

○**문진석 위원** 왜 200만 원이냐를 제가 여쭈는 게 아니고 200만 원 가지고 그 법을 강제할 수 있겠느냐,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거든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

데 이게 없던 의무를 새로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여서 기존의 공사감리자로 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행을 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부담이 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들어요, 이 법을?

○**소위원장 권영진**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질문인데요. 건축법 113조 과태료 사항을 쭉 보니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과 비슷한 수위에서 과태료 2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 실제로 부과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정확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실효적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것은 저희가 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천준호 위원** 과태료 부과는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이 문제를 강조하게 된 게 아마도 과거에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내용이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려면 현장에서 사실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되고 그게 실효적이어야만 입법 활동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마나 한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한 형태가 된다면 입법취지 자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의원께서 입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 자체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작동에 대한 실효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덜 된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신규로 신설되거나 일부 보완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시작한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 진행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차관님, 이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문진석 위원** 또 이후에 건설안전특별법 같은 것, 설계자는 설계할 때 반드시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법이 될 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안

전을 생각한다면 설계도서대로 반드시 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리가 이것을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청에 보고하니 설계도서대로 시공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은 취지를 좀 더 살리면서 강하게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태료 100만 원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과태료 100만 원으로 이 법을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여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어렵겠지요, 솔직히 말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지금 보고 자체만 따지자면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 보고 형식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는 그 취지 자체를 살리고, 이게 사실 안전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가 보고부터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서 시공이나 발주처가 받는 압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진석 위원** 타 법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 과태료 규정들이. 그런데 상당 기간 지난 과거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경제 수준에 맞춰서 과태료 100만 원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내고 말지 뭘 복잡한 일을 해요.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황운하 위원** 그런데……

**○소위원장 권영진**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 사실을 발견한 감리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통상 과태료는 보고를 안 했을 때 부과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고를 요구해서 보고를 안 하면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보고 안 하고 그걸로 끝, ‘나는 보고하느니 과태료 100만 원 물고 말 거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한 내 보고를 안 했으니까 100만 원 과태료 물고 다시 또 보고를 해야지요, 안 하면 또 100만 원 부과하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일리가 있긴 한데 그러나 법체계상 형평성, 비례성 등에 비추어볼 때 다른 법과 또는 다른 과태료 부과 규정과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다라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또 보고가 안 됐을 때 계속 보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진석 위원** 이게 허가 관청에 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설계도서대로 안 됐다 했을 때 준공검사받을 때 골치 아프거든요, 사실은. 보고 안 하면 설계대로 안 해도 준공검사받을 때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하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관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중요하다

고 생각해서 아마 보고를 하라고 이런 조항을, 법을 만들었을 텐데 이 법이 유명무실……

아까 황운하 위원님께서는 이것 계속 보고 안 하면 계속 중복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공사현장이 발생해서 완공될 때까지는 감리가 보고하는 게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 하는 건아닐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지요.

○이건태 위원 저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과 문진석 위원님이 동일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건설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건축주나 시공업자하고 감리가 한통속이 돼 가지고 불법을 묵인해 주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허가권자를 대리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허가권자한테 알리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건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감리까지 눈감아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은 기왕에 우리가 규정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너무 낮다고 생각되고요. 더구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니까 200만 원 이하로 규정하더라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이나 또는 5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태료 조항이 건축법에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113조 1항과 2항입니다. 지금 2항 100만 원 이하를 적용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1항의 200만 원 이하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항 2호에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지 아니한 자도 200만 원 이하인데 감리가, 그것을 감독해서 바르게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도록 감독해야 될 책임자가 허가권자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은 100만 원 이하다,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이종욱 위원님 발언하실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25조 보면 공사감리자가 기본적으로 건축주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그래서 보고 대상이 경미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건지 중요 법령 위반 사항인지를 구분해 줘야 되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상의를 한다는 거지요.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할 건가를 사전에 상의한다는 문구로 돼 있습니다. 알린 후 상의해서 시정할 건지 재시공할 건지 요청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허가권자한테 보고한 후에 허가권자하고 상의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공사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고치기도 하고 사전적으로 고치든 사후적으로 고치기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고 대상을, 중요한 사항은 좋은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경미한 사항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여하는, 이게 보고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프리패스될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렇

다고 공무원이 해 주겠습니까, 책임지라고 하면?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보고를 하더라도 저는 중요 사항만 하도록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라든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두고 나중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중요 사항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놔둔 이 문구대로 가면 모든 경미한 사항을 사전에 허락받아서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이렇게 과태료 100만 원 이하든 200만 원 이하든, 그러면 100만 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50만 원으로 할 건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이게 항이 200만 원 이하로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200만 원 정도로 이해를 하고 100만 원 이하 규정 항에 들어가 있다면 100만 원 정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보충설명 드리면 주로 보고를 안 하거나 그럴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경미하다라고 보면 한 100만 원이고요. 그 이외에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아니한 자, 그러니까 어떤 보고 이외에 원래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안 했을 경우는 200만 원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한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소위원장 권영진 저희라고 하면 국장님, 실장님 아니면 과장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타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소위원장 권영진 그러면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법안인 줄 알았는데 우선 국토부에서,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마는 첫 번째, 100만 원 이하가 실효성이 있는 과태료 부과 액수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한 과태료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지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잘못의 과다가 있을 텐데 이 부분들 관련해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한 이후에 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것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4)

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9)

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5)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7)

(14시33분)

○소위원장 권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권영진 의원안 제2조제4호는 공간정보의 생산·관리 주체인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개편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에 권영진 의원안 제2조제4호는 한국건설기술진흥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권영진 의원안 제2조제4호를 입법화하는 경우 관련 조문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아래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 또는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이었던 시기에는 주무기관 사전협의 절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권영진 의원안 제2조제4호가 반영되는 경우 주무기관 사전협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무기관 사전협의 규정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규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주무기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자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공기법 자체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빠진 것은 관련 기관이 일괄로 처리된 부분인데 이게 작년 초에 그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공백 상황이 벌어져서 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과학기술연구기관들이 이런 공간정보를 다루기에 지금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업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 조금 더 가까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차관님, 개정안이 2024년 1월 31일 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여기서 건설기계연구원을 제외시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추진한 사업 중에서 여러 기관들이 중복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박용갑 위원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기재부에서 2024년 1월 31일 날 건설기계연구원을 사실 제외시켰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가공간정보를 어디가 총괄했었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총괄 기관은 없고 다양한 기관에서 공간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공간정보는 LX지적공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기술연구원도 공간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LX가 거의 총괄해서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건설기계구원이 같이 나눠서 하다 중복 투자 부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제외시켰던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런 취지는 아니고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게 있고 그 공간정보를 다루고 이용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과 이용 분야가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생산이나 주요한 기초적인 것은 LX에서 구축하고 많이 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도 그 공간정보를 기초로 해서, 예를 들어 모빌리티 관련된 일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정보를 이용하거나 응용형 기술개발은 여러 기관들에서 나눠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생산이나 핵심적인 디지털 매입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LX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이용이나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게 특정한 기관으로 거기를 다 통합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LX에서는, 이런 것을 생산해 내는 작업도 LX가 하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LX가 생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박용갑 위원 다 하고 있지요. 그걸 이용해서 연구를 한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요, 예를 들어 다양한 연구기관들에서 공간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공간정보를 다루게 되면 그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가 제외되게 되면 그런 과정을 좀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줌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2024년 1월 31일 건설기술연구원을 왜 제외시켰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그때는 정부 관료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운위에다가 그런 과학기술연구원들을 넣었을 때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경쟁력 저하 문제가 있어서, 건설기술연구원만 뺀 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된 연구기관이 한 22개가 있었는데 22개 전부를 제외했습니다. 그중에 건설기술연구원이 포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용갑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제인 정부 때, 이게 지금 새롭게 우리가 지적재조사라는 것 등등 있지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LX에서 많은 인원을 뽑았고 했는데 사업을 계속 줄여 나가요. 그러면 LX의 그 인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나눠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기존의 LX의……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위원님, 그게 LX에서 다루는 건 원래 LH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공간정보하고 LX에서 하던 공간정보를 어떻게 보면 합쳐서 주로 생산 쪽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트윈 같은 특정한 기술 위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은 기관은 공간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예를 들어서 드론 관련 기술도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도 있고 그리고 기타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다 연계를 해서 하는 2차적 기술들에 굉장히 많이 특화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1차적은 LX에서 하고 2차적인 문제는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서 한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LX도 하고 있고요.

○**박용갑 위원** LX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박용갑 위원** 지금 국가공간정보의 가장 많은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데가 LX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원들도, 직원들도 많이 뽑아 놓고 그랬는데 사업을 자꾸 이렇게 나눠 주고 LX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것을 LX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게 잘 아시겠지만 건설기술연구원의 어떤 기술이라는 게 건설기술과 관련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일종의, LX 자체는 지적 베이스로 된 연구기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제약된 기술입니다.

○**박용갑 위원** 그러면 LX하고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하는 일이 다르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 성격이……

○**박용갑 위원** 여기 LX는 1차적인 그런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는 않고 1차적인 기초적인 조사에다 생산까지 하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LX가 잘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또 LX가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건설기술연구원은 저희 건설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다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LX가 다루는 분야는 굉장히 한정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이라든지 건설시추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기원에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정보를 만약에 LX가 한다고 그러면 LX의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역량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잘 오퍼레이팅이 되기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LX에서 지금 지하공간통합지도 같은 경우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걸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LX에서 도로대장, 지적측량, 주소, 지하공간통합지도, 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아니, 당연히 LX가 하는 건 맞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분야라는 거는 굉장히 거기……

○**박용갑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LX는 1차적인 그런 사업이고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데가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전을 강조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성이 강한 기술들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생산을 하고 안전을 위한 베이스맵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LX가 구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LX가 그런 안전과 관련된 기술은 지도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용자에 대한 각종 정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건설기술연구원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거에 특화해서 기술개발하려면 LX가 그걸 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다루는 연구기관들이 주로 기초적인 연구과제로서는 정보 공유를 하지만 응용적인 기술은 연구기관이 고유로 발전되어 온 노하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더 디벨롭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4항에 보면 염태영 의원님과 송기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있는데 기본공간정보 정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여기는 통합을 강조했어요. 여기는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기는 분리를 강조했고, 국토부 의견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 부분은 법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바로 비교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논의 때 저희가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님, 정부 측에서 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공간정보산업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안전의 확보, 재난 예방을 LX 하나로 이렇게 관리기관으로 하는 게 더 국민 편익 관점에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두 개 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판단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게 맞는 가장 큰 이유는 LH하고 아까 말했던 LX가

기술 통합을 했을 때는 사실은 LX로서의 어떤 통합이 그만큼 편익이나 효율 측면에서 좋다는 판단이 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초적인 형태고 데이터베이스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인데 건설기술연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2차 응용기술 쪽이나 이용자 측면, 국민 편익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건설기술연구원 부분은 LX로 넘기기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박용갑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소위원장 권영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거를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했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김정재 위원** 이거 했을 때 또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생산하고 또는 이용·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되게 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지정 해제한 결과 그렇게 안됐다는 소리입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게 그때 공운위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때 22개 기관을……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모두가 다 했던 해제한 목적이 소위 말하면 인력이나 예산에서 좀 더 자율성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연구를 해라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야 될 걸 분절하고 단절하고 일이 안 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그렇지요, 이 당시에?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김정재 위원** 당시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것도 정부에서 취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해 봤더니 안 된다는 거 이 뜻인가요? 해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정보를 생산하고 하는 LX와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좀 더 재난 문제나 스마트 도시 문제나 등등을 하기에는 건기원이 같이 연구기관으로 돼야만, 지정 해제된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거냐 하면 그 당시 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의 기관들을 전부 공공기관에서 해제를 해 버리니까 여러 법들이 그 기관들을 공공기관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거에 대한 입법을 바로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 해제를 하고 공간정보를 다루는 건기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업무를 하기 위

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입법 보완을 해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입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효용성……

○**김정재 위원** 그러면 24년 1월에 이렇게 공공기관 지위를, 그러니까 관리기관이지요. 공공기관 지정 해제되면서 이때부터 바로 그 문제점이 있었고 보완해야 될 입법이었다, 보완해야 될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24년 1월부터?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그 당시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판단해 보면 그 당시 이후로 건설기술연구원이 공간정보를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이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김정재 위원** 박탈당하고는 그다음에는 이용을 못 하고 있었나요, 1년 반 동안?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특히 어떤 특정 정보에 관해서 교류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했듯이 사전 협의, 시정 협의라든지 이런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간정보 기술을 예전처럼 쉽게 못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버린 겁니다.

○**김정재 위원** 1년 반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김정재 위원** 국토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방금 차관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원래부터 관리기관이었는데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되면서 관리기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미비였는데요, 좀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부가 사실은 이 문제를 작년부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2024년, 이 법이 발의된 게 작년 10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미비였던 거를 이제 다시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22개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건기원 말고도 이런 게 많습니까?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이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게 4개의 법이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4개 있어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이거 말고 3개 더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천준호 위원** 예.

○**소위원장 권영진** 천준호 위원님 하시고 박용갑 위원님.

○**천준호 위원** 그 취지 자체가 지위가 변경된 것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수정안 제출해 주신 대로 통과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용갑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토부가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국토교통부가 빈집플랫폼 사업 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박용갑 위원** 과거에 빈집 플랫폼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에 도시 빈집은 부동산원에다 맡기고 또는 LX에다 맡기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농촌 빈집은 농식품부에서 했었고. 그런데 국토부가 이것은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 것을 사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LX가 하던 것을 부동산원에 다 맡겼어요. 그렇지요?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분리하는 게 맞고, 이것은 통합하는 게 맞고. 그렇게 했었지요? 빈집 사업 했었잖아요? 빈집 사업 했었는데 그때는 LX나 부동산원에서 했던 것을 다 부동산원으로 통합을 했지요? 그게 맞나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맞지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예.

○**박용갑 위원** 이게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국토부가 제안을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안 미비에 대한 일종의 보완적 작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기관 간 업무기능 조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LH하고 LX 공간정보 업무 통합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원으로 LH가 갖고 있던 업무를 또 통합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국토부가 하는 업무를 또 어떤 때는 부동산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전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용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번 법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각각 기관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갑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요. LX가 사실 행안부 소속이었지요? 그게 이제 국토부로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사실 LH에 대해서 조금은……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염려도 해 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부는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항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3·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병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표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두 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안처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간

정보의 활용 기반을 확충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정의 규정, 엄태영 의원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는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기본공간정보에 관한 사항과 국토교통부 고시로 되어 있는 기본공간정보 구축 규정에 따른 기본공간정보의 정의 규정 등을 통합·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의원안 제2조제2호의2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주체를 정의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연번 3번 엄태영 의원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엄태영 의원안 제2조제1호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구축, 관리, 활용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엄태영 의원안 제19조제7항에서는 ‘상호운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상호운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데이터의 연계 또는 호환성 등과 관련한 전자정부법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엄태영 의원안 제19조제7항의 ‘상호운영성’을 ‘상호운용성’으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엄태영 의원안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신규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개선하는 경우에도 중복투자의 방지를 위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중복투자 방지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 주십시오.

엄태영 의원안은 개선 중 경미한 개선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의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고 공간정보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25페이지 우측 상단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개선에 대해서는 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엄태영 의원안 및 송기현 의원안 제34조제2항은 공통적으로 각각 법령과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 즉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서 개정안은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관리기관 중 공공기관은 327개, 민간기관은 40개로서 관리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서 방대한 분량의 공간정보가 구축·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을 포함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보다 촉진하고 공간정보가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엄태영 의원안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그리고 송기현 의원안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뒤 페이지 32페이지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엄태영 의원안은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 시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폐지하고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 시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중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반면에, 송기현 의원안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전문위원회 의견 청취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관리규정 기본지침의 작성 근거,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의 개정 시 협의 절차 생략 근거, 보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기관과 협의체 또는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엄태영 의원안 제35조제2항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모든 관리기관에 적용되는 전문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 한편 송기현 의원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인데 현행 규정이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 시 전문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2단계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은 보안관리규정의 안보적 중요성 및 체계정합성 유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 폐지 여부는 행정효율성 제고 효과와 아울러 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엄태영 의원안 제35조제2항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경우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시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대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입법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 효과와 아울러 정보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현행법 제3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정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엄태영 의원안과 송기현 의원안 제35조의2제2항은 보안심사 절차의 예외로서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안심사는 특정 공간정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도적·기술적·물리적 요건에 관한 것인데 다수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건에 대하여 해당 모든 관리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각 개정안은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특정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 관리기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관리기관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보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중복적인 보안심사 요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권한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44페이지에 정리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 제35조의3제1항 및 제35조의4제1항은 공통적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주체를 현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엄태웅 의원안 제35조의5제1항은 현행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송기현 의원안은 모든 관리기관이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 등의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엄태웅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송기현 의원안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 운영상 별도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송기현 의원안과 같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9번 엄태영 의원안 및 송기현 의원안 제35조의6은 군사기지·군사시설·국가중요시

설 등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위장·삭제·흐림처리 등 보안처리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에 보안시설이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보안성 검토를 하고 보안처리 업무를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두 개정안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처리 후 공간정보를 생산·가공·유통·판매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엄태영 의원안은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송기현 의원안 40조제5호는 송기현 의원안 제35조의6에 따른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보안처리 또는 일부 보안처리 누락 등의 경우 제재가 곤란하여 보안처리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0번,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각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하고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일부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임·위탁이 법적 규정 없이 내부방침 또는 하위규정 등에 근거를 하고 있고 국가공간정보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고도화를 위해 위임·위탁을 체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관련해서 엄태영 의원안은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수탁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형법 적용의 범위를 공무상 비밀의 누설 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송기현 의원안은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수탁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형법의 적용 범위를 엄태영 의원안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엄태영 의원안 제40조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적용되는 벌칙을 폐지하는 것이며 송기현 의원안 제40조제5호는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태영 의원안 제40조제4호 삭제의 경우 현행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제재, 즉 지정취소와 벌칙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바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보다 실효성이 높으면서도 덜 침익적인 법적 수단이 활용되도록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며, 한편 송기현 의원안 제40조제5호에 따르면 보안처리를 하지 않고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한 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데 보안처리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규정에 미흡한 보안처리도 보안처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칙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바 앞에서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처리 여부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밖의 수정의견은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전반적으로 보면 기본공간정보는 공간정보를 상호 용이하게 융복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문별로 보면 연번 2의 정의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공간정보, 기본 공간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연번 3의 기본공간정보 선정·관리 절차 개선 이 부분은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4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중복투자 방지 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 대한 수정 필요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를 하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경미한 개선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위임 근거 마련 등 수정 반영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5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6에 대한 부분과 연번 7, 연번 8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연번 6은 관리기관의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 간소화 부분이고 7번은 보안심사 절차 간소화 부분인데 그리고 연번 8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권한 개편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드리고 연번 6의 경우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드리고, 보안심사의 중복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8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보안심사 전문기

관 지정을 일원화해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 9번 부분은 국가 보안시설 관련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 마련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동 개정안으로 보안처리 근거를 처음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간에는 국가가 공간정보를 생산·공급하여 국가 자체 보안처리를 하였으나 민간이 자체적으로 위성 영상을 보급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번 10은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 관련된 공무원 의제 관련 부분입니다. 하위규정 및 내부방침으로 위임·위탁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 업무 수행 기관을 강화하여 송기현 의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연번 11번은 벌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차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김은혜 위원 저 하나 의견.....

○소위원장 권영진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공간정보와 관련해서는 차관님, 일본식 공개 제도를 따르시는 건가요? 일본식 공개 제도를 따르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권영진 일본식 공개 제도를 따르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은 국가 기본도를 비롯해서 국가가 구축한 공간정보를 토대로 민간이 활용해서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거지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정부가 정하는. 아까 안전성 검토와 같이 정하는 조건을 따르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할 때의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법률적인 위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도 반출과 관련해서는 본 법률에서 보안처리가 완료된 공간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관 법률이 지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법률에서 구글 지도 반출 요청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 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맞지요. 지금 이 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신경 쓰시는 거기 때문에 국내 산업 측면에서 접근한 법안입니다.

제가 일본의 경우를 제가 왜 같이 병용해서 보고 있느냐고 여쭤본 건 일본의 경우 산업적 이용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러나 그 기준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이나 야후 같은 그런 포털에 거의 다 정보가 공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개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협상이 명확하게 팩트 시트가 있거나 아니면 협상의 개요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국내 산업 진흥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 같은 안전성·보안성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산업 측면을 진흥하는 것도 원칙과 기준이 타당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그러면 다음 심사자료 5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2번 정의 규정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2조제1호는 공간의 범위에 ‘우주’를 추가하고 김도읍 의원안 제2조제3호는 공간정보 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은 김도읍 의원안 제2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간의 범위에 우주가 포함되는 경우 국제 분쟁 및 법률체계상 관할권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뒷 페이지 5페이지의 수정의견은 이를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6조, 제10조 및 제32조의2는 뒷 페이지에 있는 7페이지 상단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 김도읍 의원안 제21조 및 제23조는 공간정보의 표준화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아래의 표 3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 표준화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하단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21조제1항 본문 중 ‘상호 연계성’이라는 용어의 경우 데이터의 연계 또는 호환 등과 관련한 전자정보법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를 ‘상호 운용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김도읍 의원안 제21조제4항 삭제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는바 현행법 제21조제4항을 수정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5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김도읍 의원안 제24조·제25조 및 제2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뒷 페이지 22페이지 상단의 표 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 제27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의 분석·가공·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 제24조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규정과 통합함과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를 상향 입법하는 한편 안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동 센터의 업무로 규정하여 동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6번 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25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위성을 도입·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토위성의 도입·운영과 국토위성을 이용한 공간정보인 국토위성정보의 생산·가공·보안·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국토위성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안 제25조의2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무적으로 국토위성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위성센터의 존립 근거가 되는 국토위성의 도입·운영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지정·설립의 경우 우주항공청장의 재량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김도읍 의원안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국토위성센터의 설치·운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우주항공청은 위성의 운영은 우주항공청의 역할이므로 개별 부처에서는 도입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별 부처의 명칭을 반영한 위성 명칭을 법률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토위성정보’를 ‘위성정보’로 그리고 ‘국토위성’을 ‘위성’으로, ‘국토위성센터’를 ‘위성활용센터’로 각각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아래의 수정의견에는 이를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연번 7번,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은 제7장 보칙을 신설하고 제7장에 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8조의3을 신설함과 아울러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위탁과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해서는 앞에서 엄태영 의원안과 송기현 의원안 심사 시 송기현 의원안으로 조문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시행일의 경우 각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권한·업무 확대·변경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등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바 각 개정안의 입법화 여부에 따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행일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하단 부분입니다.

법제처에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김도읍 의원안 제6조제2항제9호와 관련하여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이러한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립된 계획에도 적용되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개정 내용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적용례 등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아래의 수정의견에는 이를 제2조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디지털트윈국토의 운영 기반 및 국토위성 도입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공간정보 기반 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2의 공간정보체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3의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운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4의 공간정보 표준화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5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6의 국토위성의 도입·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연번 7의 권한의 위임·위탁 그리고 마지막 연번 8의 부칙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제가……

○**소위원장 권영진**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다 동의하고요.

우주 문제는 수석전문위원님이나 국토부 의견에 동의하는데, 국제법적인 어떤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위성을 활용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상과 우주는 좀 다르잖아요. 지상 개념과 아마 법적인 개념이 좀 다를 건데 그러면 차라리…… 영공은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영공은 다 인정하니까. 그 개념을 넣어 주면 안 되나요? 분명히 김도읍 의원님께서 입법 의도가 있을 건데……

지상이라면, 전부 넓게 보면 우리 영공까지 다 포함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입법 의도가 있다면 우주까지 확장 개념이었는데 우주는 국제법적인 어떤 그런 분쟁의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영공은 다 인정하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을 저는 내 봅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일단 이게 지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용어 자체는 어느 정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공간도 있고 개인을 넘어서서 공공이 이용하는 일종의 그런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문에 ‘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위성과 관련해서 우주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법에서 우주라는 것을 담기에는 앞서 우주항공청 의견도 있었지만 그게 쉽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뺀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공간의 범위를 우주까지나 영공, 지상보다는 더 높은 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소위원장 권영진**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디지털트윈국토에 대해서 차관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차 2차 3차. 자료에 보니까 52개의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했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법은 이것에 대한 공식적으로 추진 근거를 만드는 건데 사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 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평가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는 머릿속에 안 그려지거든요. 대표적인 어떤 좋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디지털트윈국토를 활용해서 무슨 공공서비스가 개선된 게 있는지 대표적인 시범사업 모양을 보여 주면서 평가 결과와 이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법령 근거를 두고 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근거로 둔 제7차 기본계획은 2023년도 설비니까 2022년 정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결국 시범사업을 막 시작할 때 정도에 만들어 둔 기본계획 가지고 이것을 법적 근거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성과나 평가에 대해서 좀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사실 디지털트윈이 도입되고 나서 시범사업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게 개별 지자체 케이스 단위로 된 게 많습니다. 저희 1차 때는 인천이나 제주 같은 경우가 있었고 또 2차 때는 7개 지자체에 대해서 활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은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지원을 위한 3D 도시구축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디지털트윈이 아직까지 민간이나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활용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디지털트윈 자체가 일회성 연구로는 되지만 그게 지속가능성이 있기 위해서는 건축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계속 디지털트윈 모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서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나 그쪽 데이터베이스하고의 연계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회성으로서 시범 시뮬레이션 보여 주는 경우는 저도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행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작업에서 바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129억 투자했는데 그러면 지금 법적 근거도 만들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하기 위한 투자 규모나 계획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는 디지털트윈 자체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연구도 하고 또 확대도 할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하여튼 그런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아까 지자체에서 했다는 시범사업들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이 사업이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저희가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다른 위원님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김은혜 위원님이 여쭤보신 일본에서 이런 공간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공개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본이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일이라든지 태풍이 많아서 이런 데 대한, 어떻게 방제정보를 온 국민들이 공유할 것인가 이래서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예, 그런 측면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직까지……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디지털트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디지털트윈 사업이라는 게 3D 공간에 이런 정보들을 다 넣고 과연 홍수가 몇 밀리로 집중적으로 몇 시간이 왔을 때는 전국에 비가 얼마나 차서 어떻게 대피하고 피할 것인가 이런 걸 대비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다른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부처에서 맞는 방식으로 지금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재난대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교통혼잡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짓는 것, 도시계획도 있을 수 있고 지하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한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디지털트윈 사업이 전체적으로 순차적 계획이 어떤 부분부터 중점을 두고 하려고 그립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저희가 좀 막연해서요.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국 52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얻은 성과라고 본다면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재난안전, 도시계획, 교통, 방재, 행정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큰 비전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걸 디지털트윈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표준 기반 마련하자 또 관련된 지적정보를 고도화하자라고 해서 큰 방향을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그 하위에 각각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지금 사업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내용, 시범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여러 성과를 가지고 그걸 확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제를 지금 정리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재 위원** 오늘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오늘은 법안을 심사하는 데니까요. 이 법안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52개 시범사업 한 것하고 내용을 저희 방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담당자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그러면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국토부 측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32)

(15시42분)

○**소위원장 권영진**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고 특화단지 지정 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특화단지에 부여하는 등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및 규제특례 적용 범위를 국가시범도시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개정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9조제1항은 특화단지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까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특화단지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다음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에 동의하며 수석전문위원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저는 뒤의 여덟 번째 조경진흥법이나 스마트도시나 사실 국토부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관님, 왜 특화단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실장님의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스마트……

○**김은혜 위원** 저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양해를 구하시고……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은혜 위원** 저 차관님께 여쭤 봅니다. 차관님 되신 지 꽤 됐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이게 제가 봤을 때 국가가 주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확산 상황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프레임 자체가 각 지자체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또 획일적인 품에 맞추다 보면 그걸 지방정부에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율적인 방식이 가미된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꾸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기대하는 부분이 그런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던 조경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안에서 권한 위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차관님, 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재정지원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법을 처음 봤을 때 중앙정부 위원회의 심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양상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중앙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토부로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심의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중앙이 통제해서 재정지원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한다면 힘 있는 지자체만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그렇지만 이게 보통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광역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 광역 도지사가 다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는 절차들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정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방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중간 단위에 해당하는 광역 단위의 도지사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일종의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 차관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뒤의 조경진흥법의 조경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같이 스마트, 특화, 조경 다 안 됐던 이유가 성공 여부가 모든 지자체가 재정지원 여부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장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정지원 외에 진정으로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신다면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지자체 권리가 확대가 되어야지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도시별로 시험을 하고 나서 지자체 자체 권한으로 정부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한번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시험해 보면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권한을 중앙이 아니라 지자체에 주는 것이 없어요. 이 스마트도시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차관님? 그 정도는 해야지 지자체도 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주민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이상경**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런 데를 보면 특례 부여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특례와 관련된 내용 부분은 어느 정도 부여가 되는데 다만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정을 하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저희가 두게 되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법률 개정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특화단지의 지정·해제 범위까지 국가가 스마트도시위원회로 줘고 있는 한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거고요.

차관님 고생하셨고요, 조경은 이따가 이상주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영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법률안 심사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염수해서 다시 속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영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정해진 시간보다는 한 1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계속 저희들이 이 법안 심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를 하고 목요일 날 10시에 다시 법안소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 ○**출석 위원(13인)**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안태준 염태영 이건태  
이종욱 천준호 황운하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상경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건설정책국장 남영우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공공주택추진단  
단장 김배성

# 임시회의록